

제 48 차

# 임 시 이 사 회

- ◆ 일 시 : 2017년 5월 29일(월)14:00
- ◆ 장 소 : DDP살림터 2층 북세미나실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 이 사 회

이 회의록은  
속기법식에 의거,  
원본(본회의)과 상위없이  
기록·작성되었음을 확인함.

2017년 6월 1일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12-2 동룡빌딩 504호

☎ 593-4114 / (FAX) 593-4115

중 앙 속 기 사 무 소

대표 1급속기사 황미숙 (☎)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 회 순

- 회의순서 안내 ..... 1
  
- I.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4
  
- II. 상정안건 심의·의결 토의 ..... 5
  - 1. 2017년 예산 및 사업계획 변경(안) (의안번호 제138호) ..... 5
  - 2. 보수규정 일부 개정의 건 (의안번호 제139호) ..... 15
  - 3. 인사규정 일부 개정의 건 (의안번호 제140호) ..... 16
  - 4. 임직원 퇴직금규정 일부 개정의 건 (의안번호 제141호) ..... 17
  - 5. 이사회운영규정 일부 개정의 건 (의안번호 제142호) ..... 18
  - 6. 회계규정 일부 개정의 건 (의안번호 제143호) ..... 31
  
- III. 보고안건 보고 ..... 39
  - 1. 사무위임전결내규 개정의 건
  - 2. 기부금관리 및 운영규정 시행 내규 개정의 건
  - 3. 신입이사 임명 보고
  
- 기타토의 ..... 41
  
- IV. 폐회 ..... 55

(개회 : 14시 07분)

· 회의순서 안내

○ 간사 ○○○(경영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이사회 간사를 맡고 있는 경영지원팀장 ○○○입니다.  
반갑습니다.

[ 인사 및 박수 ]

오늘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48차 임시이사회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사회는 총 열 다섯(15) 분 중에서 이사님 열 두(12) 분, 그리고 감사 한(1) 분께서 참석해 주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이사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개회선언 이전에 오늘 참석해 주신 이사님과 감사님의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 이사장님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 인사 및 박수 ]

서울디자인재단 ○ ○ 대표님 이사 자격으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 인사 및 박수 ]

수원대 석좌교수이신 ○○○ 이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 인사 및 박수 ]

서울시 재정기획관이신 ○○○ 이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 인사 및 박수 ]

동아일보 논설위원실 부국장이신 ○○○ 이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 인사 및 박수 ]

서울시 문화본부장님이신 ○○○ 이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 인사 및 박수 ]

신한회계법인 감사 파트너 ○○○ 감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 인사 및 박수 ]

다음은 최근 5월 12일자로 신규 임명되어서 오늘 이사회에 처음 참석해 주신 신입이사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근로자이사로 임명되신 ○○○ 이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 인사 및 박수 ]

그 다음, 이쪽 건축 분야부터 분야별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립대 건축학부 교수님이신 ○○○ 이사님 오셨습니다.

[ 인사 및 박수 ]

지금 영상영화 분야 ○○○ 이사님 오시고 계시는 중이셔서 들어오시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디지털미디어 분야의 현재 라이나전성기재단 상임이사로 계신 ○○○ 이사님 오셨습니다.

[ 인사 및 박수 ]

다음은 패션 분야입니다.

현재 패션브랜드 데무의 디자인실 감사님이신 ○○○ 이사님 오셨습니다.

[ 인사 및 박수 ]

그 옆자리 IT 분야 지금 네이버디자인센터장님 자리가 비어있는데요. 네이버센터장님

직전 회의가 지연되셔서 많이 늦으실 것 같아요. 오시면 다시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신규 선임되신 총 일곱 분 이사님 중에서 법률 분야 법무법인 한맥 변호사이신  
○○○ 이사님 오늘 불참하셨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임이사님 임명 과정은 오늘 이사회 마지막 보고안건으로 보고 올리도록 하고요.  
오늘 신임이사님들께서 처음 하신 자리여서 재단 소개를 간략히 올릴 예정이었는데 이  
사님들 일정을 맞추다 보니까 DDP 휴관일에 맞춰졌고요.

《 ○○○ 이사 입실 》

그리고 오늘 안건이 많아서 부득이 진행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임이사님들께는 조만간 DDP 투어 일정을 별도로 잡아서 재단을 소개하는 자리를 별  
도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막 영상영화 분야 모베터필름 주식회사 대표님이신 ○○○ 이사님 도착하셨습니다.

[ 인사 및 박수 ]

감사합니다.

## I .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간사 ○○○

그러면 지금부터 이사장님께서 개회선언 하신 후에 상정안건 심의과정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 이사장 ○○○

반갑습니다.

오늘 새로 이사님들이 이렇게 오셔서 특별한 날이고, 또 ○○○ 이사께서 근로자이사로 오늘 처음 오셨거든요. 무엇보다 의미가 있는 이사회 같습니다.

또 한 본부장님, 원래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저희 담당본부장님이셨거든요.

다시 이사로 합류하셔서 여러 가지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따로 끝날 즈음해서 이사님들한테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교수님, 고맙습니다.

○○○ 선생님도 고맙고요. ○○○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사실 약간 놀란다거나 그런 일이 하나 있는데, 제가 아침에 가끔 주역 괘를 뽑아 보거든요.

그런데 오늘 괘를 뽑았는데 이게 묘해요. 오늘의 것하고 조금 묘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기러기가 무리 지어서 천천히 멀리 날아간다.’ 이게 괘예요.

다음 구절이 아주 중요한데, ‘무리 지어서 날갯짓해서 날아가는 모습이 신성한 춤의 전범이 될 것이다.’ 멋있지 않아요?

저는 무심코 메모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펼쳐 있어 가지고, 이게 꼭 저희 이사회가 앞으로 천천히 기러기 날아가듯이 춤추듯 날아갈 것이다, 이런 어떤 굉장히 길조 같은 느낌.

제가 이사회를 하면서 인사말을 처음 해 봅니다.

그러면 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 II. 상정안건 심의·의결 토의

### 【 의안번호 제138호 : 2017년 예산 및 사업계획 변경(안) 】

○ 이사장 ○○○

우선 상정안건이 많은 것 같은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간사 ○○○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상정안건 제138호에 대해서 제안설명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쇄자료 (p)3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8호 안건은 2017년 예산 및 사업계획 변경의 건으로 주요골자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 9월에 진행되는 서울도시건축 비엔날레 사업에서 입장료 수입 4억5천만원 발생이 추가 예측됨에 따라서 세입과 세출을 조정하는 건이고요. 세입으로 들어오게 될 4억5천만원은 행사 대관과 사업 예비비로 재편성됩니다.

두 번째는 재단 예비비 사용의 건입니다.

2017년 현재 기준으로 재단 예비비는 총 44억이 있고요, 이중 41억을 필요사업비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DDP 자체 콘텐츠 강화와 시설 인프라 관리비용 부족분에 19억, 그리고 서울 건축과 디자인의 만남 공간 구축 사업에 17억, 추계 패션위크 개최에 5억, 이렇게 총 45억을 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따라서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서울패션위크의 경우에는 민간기업의 기부금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서 신진디자이너 패션쇼, 시민참여 문화 이벤트 개최 이런 사업들을 추가하는 것이고요. 재원은 2014년 고유사업화 이후에 적립된 패션사업 이월금으로 충당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자료에 첨부된 사업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이사장 ○○○



오늘 논의안건 중 가장 중요한 안건인데요. 건축 비엔날레 관련해서 예산인데, 이사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특히 ○○○ 이사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가장 관련이 많으실 테니까 여러 번 발언을 해 주시죠.  
우선 먼저 얘기해 주시겠어요?

○ 이사 ○○○

잔여예산은 지금 추가로 도시건축 비엔날레 건축과 디자인 만남 공간 조성이라고 돼 있는 사업에 예산을 마련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지금 5월에 도시건축 비엔날레가 계획이 돼서 진행하고 있는데, 내용으로 보면 디자인과 건축의 만남이라는 내용으로 돼 있는데 이게 사업에 보면 정책사업에 도시건축 비엔날레 항목으로 들어가 있어서요.

○ 대표이사 ○ ○

사실은 이게 도시건축 비엔날레 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 이사 ○○○

별개입니까?

○ 대표이사 ○ ○

예. 업무 분장도 별개이고요, 이것은 별도 서울시 디자인건축 홍보관 비슷한 키오스크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플랜은 도시공간기획단에서 하고, 저희가 건축도시 비엔날레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연관성이 있어서 저희 재단의 고유사업으로 예산을 바꿔서 쓰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 이사 ○○○

알겠습니다.

올해 1회용으로 남은 예산 가지고 쓰는 것이죠? 지속적인 사업은 아닌 것이죠?

○ 대표이사 ○ ○

예, 올해 1회.

비엔날레와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올해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이사 ○○○

예. 그런 사업이라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이사 ○○○

다만 한 가지만 여쭙보고 싶은 것은, 많은 분들이 보게 되겠죠. 그런데 두 달 동안인데 유료 관람객을 20만 명 잡으셨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유료관객.

○ 간사 ○○○

관련해서 기획경영팀장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경영팀장 ○○○

안녕하세요. 기획경영팀장입니다.

저희가 도시건축 비엔날레 관람객 목표 수 같은 경우는 유사 비엔날레의 사례를 분석해서 도출했습니다.

아무래도 1회 행사이다 보니까 정확한 수치에 대한 계산은 불가하겠지만, 저희가 국내 행사, 광주디자인 비엔날레라든지 광주비엔날레, 그리고 해외 같은 경우 베니스 비엔날레 등 유명한 행사들을 분석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이사 ○○○

그렇게 하려면 사전에 아주 오래 전부터 어떤 행사고 마케팅이 굉장히 잘 돼 있지 않으면 이만한 숫자를 동원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 계획을 크게 세워 놓으시면 나중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 기획경영팀장 ○○○

예, 맞습니다.

지금 사전 홍보활동을 강화해서요, 특히 이번 달부터 저희가 홍보를 진행했는데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여러 가지 매체와 서울시 협력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대표이사 ○ ○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게, 단일 입장객이 아니라 120여 개 행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입장수를 총 망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것인데, 오늘 비엔날레 팀장이 기자간담회가 있어서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는데요. 저희가 이 비용을 받아서 DDP 대관료, 그동안 거의 무료로 쓰다시피 한 것을 서로 회계상으로 계상을 하는 것이거든요.

○ 이사 ○ ○ ○

예.

○ 감사 ○ ○ ○

혹시 여기 판매대행수수료 11%에는 부가세가 포함이 돼 있는 것인가요?

○ 기획경영팀장 ○ ○ ○

아니요. 부가세는 별도이고, 지금 판매대행수수료 11%에 티켓운영비, 그리고 부가세 10%를 포함해서 저희가 수수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했습니다.

○ 감사 ○ ○ ○

판매액의 10%가 부가세이고 판매대행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나중에 환급을 받으실 수 있을 텐데 그것은 안 돼 있는..

○ 기획경영팀장 ○ ○ ○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사실 답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부득이하게 그래서 감사님께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사 ○ ○ ○

패션위크 사업이 기존에 민간협찬 부분이 올해는 여의치 않게 됐다는 말씀이시죠?

○ 기획경영팀장 ○ ○ ○

예. 저희가 지난해 같은 경우는 헤라의 타이틀 스폰서십을 체결해서 두 시즌에 걸쳐서 10억원의 협찬금을 받아서, 출연금으로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부족한 행사비를 충당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 시즌에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서 지금 현실상 한 시즌에 5억원 정도의 행사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 이사 ○○○

그런데 아쉽기는 하네요. ‘꼭 헤라가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대체 스폰서나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찾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지금 현실적으로 시간상으로 어렵다?

○ 기획경영팀장 ○○○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은 하고 있는데 시간상 조금 부족한 상황이고, 저희 패션본부장님께서 부가설명 해 주시겠습니다.

○ 이사 ○○○

하나만 더 여쭙볼게요.

지금 실무적으로 우리 예비비 중에서 규정 상 안 맞는 게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 다 조정이 되는 것이죠?

○ 기획경영팀장 ○○○

예, 조정이 됐습니다.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 패션문화본부장 ○○○

패션문화본부장 ○○○입니다.

저희가 헤라 같은 타이틀 스폰서십이 10억원 이상씩 1년에 스폰을 받다가 지난 시즌 종료가 됐고요.

저희 패션위크가 브랜딩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헤라 같이 10억 이상의 그런 금액을 갖고 저희 패션위크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자동차나 기타 그런 기업들과 같이 활발하게 넥스트 네임 스폰서십을 의논하고 있는데, 그것과 별도로 저희 패션위크가 시민참여 이벤트가 지난 시즌부터 많이 확대돼서 그런 것들에 대한 안정적인 자원마련이나 이런 것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비비 5억을 따로 받고요, 지속적으로 저희가 기업과 같이 콜라보하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사 ○○○

재원도 재원이지만 한편으로 서울 패션위크의 위상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꼭 이것을 시 예산이나 재단 자금만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여기 스폰하려고 줄을 서있다, 이런 정도로 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게 신규로 대외 협찬 같은 것들을 늘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기존에 하던 폭까지 줄이는 게, 사실 돈 몇 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노력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 패션문화본부장 ○○○

저희 패션위크가 1년에 두 번 열고 있는데요. 패션위크 규모가 토탈 50억 정도 되는데, 서울시출연금이 한 26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펀드레이징하고 참가비로 재원을 조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차 참여하고 싶어하는 그런 기업들은 많은데 그것들을 점점 늘려나가는 것도 한 방향이기는 한데, 저희가 너무 기업들한테 많이 의존하다 보니 재원이 stable하지 않고 기업의 사정에 따라 Up & Down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고려해서 저희만의 패션위크를 특화시키는 방향으로 고려 중에 있습니다.

○ 이사 ○○○

사실 패션위크를 한다면 단순히 행사로 끝나는 것보다는, 결국 맨해튼 같은 경우에 42번가를 중심으로 한 패션 district 같은 경우에 사실 굉장히 많은 쇼룸들이 있고 거기에 와서 자기가 디자인한 것을 release하려는 그런 트레이드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야 될 텐데요. 그냥 패션쇼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떨어진다고 보고, 패션산업 자체를 아시아 지역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행사로 발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 패션문화본부장 ○○○

예.

○ 대표이사 ○ ○

올해는 말씀처럼 DDP에서 하는 패션 콜렉션이나 쇼가 아니라 저희가 워크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에는 서울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패션쇼에 지원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예산이 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 이사장 ○○○

○○○ 이사님.

○ 이사 ○○○

예, 저는 총괄의견 드리겠습니다.

○ 이사장 ○○○

혹시 패션 쪽에 ○○○ 이사님, 의견 있으면 얘기해 주시죠.

○ 이사 ○○○

저는 이 사업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알기 때문에 더 얘기할 것은 없는 것 같고요.

○ 이사장 ○○○

○○○ 이사님.

○ 이사 ○○○

저는 처음 왔으니까 듣기만 할게요.

서울콜렉션 워낙 오랫동안 참여를 했었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계속 해 보면 거기서 BMW에서 협찬을 해 가지고 행사를 하고 있기도 하는데, 대부분 다 자동차회사들이 스폰을 하더라고요.

현대자동차 같은 데서 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잘 모르겠으니까 저는 듣기만 할게요.

그런데 참여는 굉장히 오랫동안 했어요. 서울콜렉션이 처음에 디자이너 참여비 500만 원, 700, 800, 1000, 2000 올라가는 것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거기 통해서 굉장히 저는, 아까 시민들 참여, 시민들이 관심이 많았는데 올해 보게 굉장히 축제처럼 많이 변했더라고요. 와서 깜짝 놀랐는데 굉장히 많

은, 또 찾아오는 손님들도 굉장히 즐거워하고, 또 축제처럼 하고 아이들도 참여가 높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시아의 주도권, 잘 발전시키면 굉장히 좋은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 이사장 ○○○

○○○ 이사님.

○ 이사 ○○○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는 읽어보니까 이해는 되는데, 서류상으로 특히 신입이사님들 같은 경우는 세입·세출 조정되고 예비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용어가 생소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저야 하던 업무니까 이해가 되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설명할 때 좀 더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이사장 ○○○

간략하게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죠.

○ 기획경영팀장 ○○○

예. 저희가 이번 예산 및 사업계획 변경(안)은 지난 이사회 때 3월에 저희가 작년도에 집행한 지출액과 저희 수입액의 차이만큼을 남겨놓게 되었는데 그 금액을 신규사업에 투자하는 건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번 예비비 사용을 통한 사업계획 변경에 예비비로 가지고 있던 43억원 중 3월에 편성했던 사업비에서 신규 추가된 사업이라든지 저희가 운영경비상에 부족분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를 하는 부분이고요.

1번의 경우 서울시건축 비엔날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작년도에 입장료 수입이라든지 유료관람객 수를 산정해서 입장료 수입을 산정한 상태에서 올해 예산을 확정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첫 해 행사이다 보니까 관람객 수치를 저희가 가늠하는 과정이 조금 늦어져서요, 지금 입장료 수입을 4억5천만원으로 잡고 그것에 대한 지출분을 결정해서, 대부분 DDP에 대한 대관료로 나가는 부분인데 그 부분의 사업을 일부 변경

하게 된 건입니다.

○ 이사장 ○○○

한 본부장님이 조금 더 간략하게 저희를 위해서 요약해 주시죠.

○ 이사 ○○○

현직에 당연직 이사님들이 고 이사님도 계시고 ○○○ 이사님도 계시기 때문에, 약간 이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통상 사업이 이러이런 사업에 사정이 생겨서 예산상의 기법을 통해서 조정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설명을 먼저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정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예산 기술적인 방법으로서 조정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예산적인 표현만 보고서에 딱 나와 있으니까 처음 이해하실 때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이사장 ○○○

저도 지금 한 이사님이 말씀해 주셔서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방 이사님 혹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 이사 ○○○

오늘 첫 임시이사회인데 이상하게 DDP 올 때만 되면 DDP가 저를 거부하는지 길을 몇 번을 헤매고 굉장히 기러기 날아가듯 갔다가.. 너무 죄송합니다.

일단 제가 있어야 될 자리인지, 있어야 되는 자리로 만들어야 되겠죠.

어쨌든 인간과 환경을 아우르는 것이 결국은 또 디자인이고, 그 안에는 항상 영상이 있었으니까요.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총무로 뮤지컬영화제작조직위원인데요, DDP에서 상영회를 했던 게 굉장히 반향이 좋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도 영상물은 같이 혹은 축제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 더 많아지기 바라구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겠고, 예산에 대해서 증액 이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 이사장 ○○○

이 건이 오늘 가장 중요한 논의안건이라고 보는데, 또 어떤 의견이 없으시면 의견 수렴



은 이 정도로 할까요?

[ “예.” 하는 이사들 있음 ]

○ 이사장 ○○○

그러면 의결을 지금 할까요, 나중에 한꺼번에 할까요?

○ 이사 ○○○

한 건 한 건 하시죠.

○ 이사장 ○○○

예.

그러면 이것(제138호 「2017년 예산 및 사업계획 변경(안)」)은 제안한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도록 할까요?

[ 이사들 “예.” ]

그러면 의결을 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 의안번호 제139호 : 보수규정 일부 개정의 건 】**

○ 이사장 ○○○

다음 안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간사 ○○○

다음 안건 139호부터 143호까지가 모두 규정 개정에 대한 건인데요. 방금 한 건 한 건 의결하기로 하셨으니깐 한 건 한 건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쇄자료 (p)33 의안번호 제139호 보수규정 일부 개정(안)입니다.

본안의 주요골자는 첫 번째, 재단 보수규정 제8조에 의거해서 매년 직원의 기본연봉 한계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매년 시행되는 사항이고요, 올해 2017년에는 서울시 총 인건비 기본인상률 3.5%를 준용하여 상·하한액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휴일근무 조정에 관한 것입니다.

최근 근로시간을 감축해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서울시 정책에 따라서 휴일근무 적용 범위를 월 4일에서 예산범위 내로 감소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휴일근무수당 감소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 측과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39호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이사장 ○○○

지금 나머지 5개 안건은 거의 규정에 관한 문제거든요.

한꺼번에 설명을 하고 의결을 한꺼번에 할까요?

**[ “예.” 하는 이사가 있음 ]**

그러면 이어서 설명을 해 주시죠.

○ 간사 ○○○

예, 알겠습니다.

**【 의안번호 제140호 : 인사규정 일부 개정의 건 】**

○ 간사 ○○○

그러면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40호 인사규정 개정(안)입니다. 인쇄자료 (p)44를 보아주십시오.

본안의 주요골자도 2가지입니다.

첫째, 재단은 매년 공개채용을 통해서 직원 채용을 진행해 온 바, 현재 시행하고 있지 않은 특별채용 관련 부분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둘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서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140호 인사규정 개정(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 의안번호 제141호 : 임직원 퇴직금규정 일부 개정의 건 】**

○ 간사 ○○○

다음 (p)48 보시겠습니다.

제141호 임직원 퇴직금규정 개정(안)입니다.

저희 재단은 『지방출자·출연기관 임금피크제 운영지침』에 따라서 2017년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임피제 대상자들은 매년 연봉이 하향 조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이 매년 감소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근로자의 불이익 방지를 위해서 대상이 되면 매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재단 규정에 중간정산 제한 조항을 삭제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동시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에 따라서 중간정산 사유를 준용해서 명시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안건 설명을 마치고요.

**【 의안번호 제142호 : 이사회운영규정 일부 개정의 건 】**

○ 간사 ○○○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42호 이사회운영규정 개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쇄자료 (p)53입니다.

본안은 2016년 서울시 공기업담당관의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운영관련 제도 개선계획』에 따라서 필요 시 이사장이 서명 날인한 긴급통지 사유서로 긴급 이사회 소집이 가능하도록 하고요, 이사회 안건 설명자의 직명을 현재 직제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의안번호 제143호 : 회계규정 일부 개정의 건 】**

○ 간사 ○○○

마지막으로 (p)56 보시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3호 회계규정 개정(안)입니다.

본안도 앞서와 같이 현재 업무분장에 맞게 직명을 변경하는 건이고요, 최근 진행 중인 전산 고도화 작업을 통해서 수동으로 작성하던 회계보고 형식을 전산자료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관련 내부규정을 연동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회계규정 관련해서 내용이 많아서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조금 전에 감사님 계도 설명 드렸지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서 그 내용을 연동시키는 건이어서 특별한 이슈사항은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이사장 ○○○

여러 개인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감사님이 얘기하실 게 있을 것 같은데요.

○ 감사 ○○○

이게 사기업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규정 gab이 커서요, 이렇게 보면 일단 지자체인가요, 상위법 말씀해 주셨는데, 그쪽 규정을 따른다고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가지고 이슈를 제기하기는 조금 그럴 것 같고요.

어쨌든 재단과 예산,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분들이 체계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계속 그것을 잘 따르시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사장 ○○○

그래도 저희들이 공부하는 차원에서 혹시 약간 코멘트하실 게 있으면 해 주시죠.

○ 감사 ○○○

예를 들면 (p)57에 선급금 지급기준 중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선급금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겠지만 계약을 1억을 했을 때 계약금으로 7천만원까지는 선지급을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개념인데요. 일반적인 사기업에서는 이렇게 70%씩 먼저 주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30%로 출발을 하고요, 그 진행되는 과정에 따라서 검수과정을 통해서 대금의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계약서 작성의 경우에 5천만원 이하인 계약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관공서에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그런데 일반적으로 계약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작은 것이라도 계약서 작성을 통해서 서로간에 어떤 시시비비,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에 대한 저희 보호장치로서 충분히 계약서는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가능하다면 보완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사장 ○○○

중요한 말씀 하셨네요

○○○ 기획관님이..

○ 이사 ○○○

이 건도 아마 실무적으로 의견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 감사님 말씀하신 선급금 부분은 맥시멈을 선정하는 것이고요. 당연히 선급금을 지불하는 경우에는 정부 관련 회계규정에 따라서 사업 종료에 대한 보증서류나 이런 어떤 사업을 담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치고 선급금을 주게 되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것은 공무원들의 회계도 마찬가지인데 한편으로는 기업 발주처의 예산 절감 효과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사업 특성에 따라서 그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초기에 돈이 많이 나가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민간사업자의 일을 원활하게 하거나, 또 더 크게는 소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산을 조기에 집행해서 전체 민간 경기 같은 것들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같이 있는 부분이고 이것은 어떤 한도규정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계약서 작성 생략은 아마도 이게 수의계약 가능금액을 얘기하는 것이죠?

○ 간사 ○○○

아닙니다. 계약서를 생략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저희가 수의계약 기준은 세부적으로 물품 같은 경우에는 1,500만원, 그리고 용역은 2천만원, 이렇게 더 아래 한도로 하향조정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대기준을 5천만원이라고 한 것이고, 내부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또 내부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금액대별로 계약 절차 이런 것들 다 이행하고 있습니다.

○ 이시장 ○○○

또 혹시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 이사 ○○○

그러니까 계약심의위원회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그것을 지금 규정하는 것인가요, 이 조항이?

○ 간사 ○○○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심의절차는 금액대별로 다 별도로 정해져 있고요.

지금 세부내용을 보시면, (p)60 제72조 5항 보시면 '(수의계약 집행기준)' 해서 수의계약에 관련되는 것은 별도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p)60 하단 여섯 번째 줄 보시면 '총액기준 5천만원, 그리고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계약' 이렇게 '물품이나, 용역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금액기준은 또 다르게 되어 있고요. 수의계약 기준에 별도로 되어 있고, 지금 명시되어 있는 이 5천만원은 계약서를 생략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이것은 법령에 의거해서 연동되는 부분이지, 저희 내부적으로는 계약서 절차를 다 이행하고 있습니다.

○ 이사 ○○○

법령 어디에 근거했어요?

계약금액 5천만원 이하의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어디 있죠?

○ 이사 ○○○

---



저도 처음이라. 저도 공무원생활하면서 처음 듣거든요.

○ 이사 ○○○

이게 어디에 근거했습니까?

○ 이사 ○○○

(p)58 '22조(선급금)

○ 이사 ○○○

선급금 아닙니다.

이것은 계약서를 생략하는데, 세상에 계약서를 생략하는 경우가 5천만원 이하짜리 계약을, 그러면 직원이 마음대로 그냥 누구한테 계약하면 되는 거예요?

계약서도 없이 어떻게 가능한 것이죠?

○ 이사 ○○○

조금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 보면 조항도 73조이고요. 73조에 수의계약 집행기준을,

○ 이사 ○○○

수의계약 사유는 제가 알겠고, 계약서를 생략한다는 게, 우리 공공기관에서 무슨 계약을 하는데 어떻게 계약서 없이..

그러면 어떻게 계약을 맺는 것이죠? 5천만원 이하면 상당히 큰데.

○ 이사 ○○○

그러니까 5천만원이라는 기준이 수의계약 기준보다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경우, 그러니까 공개경쟁을 해야 되는 경우에도 소위 말해서 계약서를 작성 안 해도 된다는 근거규정인데, 저도 사실 이것 보면서, 저도 퇴직한 지 한 1년 가까이 됩니다만 평생 공무원생활하면서 이런 규정을 한 번도 본 일이 없어서, 아마 우리 고 본부장님 이 이사님이나 똑같이 다 보통 공직에서 본 규정이 아닌 것 같아서, 약간..

○ 이사장 ○○○

자세히 한번 살펴봐 주시죠.

○ 이사 ○○○

근거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상위법 근거를 알려주시면 돼요.

○ 간사 ○○○

잠깐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개별 설명 -

○ 이사 ○○○

수의계약에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 이사 ○○○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매를 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맺을 필요가 없죠.

경매는 제가 낙찰을 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계약서를 써야 될 이  
유가 없으니까 계약서를 생략하는 경우일 수 있거든요.

그런 조항들은 전혀 문제가, 그 밑에 있는 조항들은 문제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위에 계약금액이 5천만원이라는 그 부분이..

○ 간사 ○○○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 내용은 사실 상위 법령을 따라서 개정하는 부분이어서 자세히 보지 않았는  
데요. 여기 보면 14조 1항 단서에 따라서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 경매에 부치  
는 경우, 기타 이런 건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별도로 정했다거나 임  
의적으로 해서 법령 규정하는 건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안건 논의 중에 저희가,

○ 이사 ○○○

상위법령이 어떤 법령인데요?

○ 이사 ○○○

지방계약법 14조 1항을 먼저 보세요.

14조 1항에 따라서 하는 경우에는 한다는 얘기잖아요.

○ 간사 ○○○

14조 1항을 봤는데 특별한 내용이 없어 가지고요.

- 개별 논의 -

우선 감사님 지적 감사합니다.

미처 이 부분은 상세하게 준비되지 못해서 지금 찾아가면서 설명을 드리려니 조금 궁색합니다.

제가 중간에 다시 한 번 보고 최종이라도 정리가 되면 말씀을 드리거나, 아니면 다음 이사회 때,

○ 감사 ○○○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 (p)58을 한번 봐주시면 61조 현행 법령이 있고 개정(안)이 있습니다.

그 현행 법령에 61조를 보면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계약서를 생략할 수 있다.' 이 문구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 밑에 다음 각호를 살펴보면, (p)59 1호에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이니까 아까 말씀하신 수의계약 건과 관련된 것을 의미하신 것 같고요.

2번이 '물품매각의 경우에 대금 납부하고 물품을 인수하니까 굳이 계약서가 필요 없다' 라는 판단 하에 이런 조항을 만드신 것 같고, 그 다음에 관허요금이나 요율에 의한 것은 명확하게 되어 있으니까 더 이상의 이슈가 없으니까 계약서가 필요없다 라고 정하신 것이고, 네 번째는 정부투자기관이나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슈가 없다 라는 판단 하에 이전에 현행 이 법령이 이렇게 만들어졌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1호에 나와있는 3천만원, 5천만원은 매칭을 시키다 보니까 앞에 표현이 왜곡돼서 나타난 듯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계약금액 5천만원 이하라는 이 문구만 부각돼서 그런 것이고, 이해를 하자면 그냥 계약서를 패스할 수 있다 라는 것을 가지고 얘기한 것인데, 제 판단에는 5천만원이라는 이 금액 자체는 사실 너무 큰 금액이고, 그리고 앞서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의계약을 초과하는 계약금액을 이렇게 계약서 없이 작성한다는 것은 큰 이슈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 판단에는 수의계약도 사실은 계약서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고, 제가 과거에 관공서와 수의계약을 할 때도 저는 계약서를 제출하고 받는 그런 절차를 받아왔었기 때문에 조항과 무관하게 계약서는 중요성을 판단하셔서 작성하심이 좋을 거라는 의견입니다.

○ 이사 ○○○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자칫 이것이 내부적으로 잘못 오해를 해서 가지고 마치 계약서를 안 써도 되는 조항처럼 여겨져서, 굉장히 많은 구매계약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많이 이루어질 텐데 오해가 있어서 '아, 앞으로는 안 써도 되는 것' 이렇게 오해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서, 경매라든지 기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라든지 내가 있는 물건을 팔 경우라든지 이런 특이한 케이스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마이너한 경우이기 때문에 확대해석이 잘못될까봐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사 ○○○

지금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개정하는 것이잖아요.

○ 간사 ○○○

예. 현재,

○ 이사 ○○○

그것을 근거로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안 된다 해 버리면..

○ 이사 ○○○

일단 세부적인 것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추측컨대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계약서 자체를 안 써도 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고, 보니까 굉장히 어떤 실무적인 단위에서 계약서라는 것들이 계약서 하나 외에도 여러 가지 부속 첨부서류들이 많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의 일부를 간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의미로 읽히는데, 지금 이 문맥만 보면 마치 5천만원 이하의 계약서 안 쓰고 말로

해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서 혼선이 있는 것이거든요.  
실무라인에서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 간사 ○○○

예, 알겠습니다.

○ 이사 ○○○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네요.  
이사장님, 다른 부분들 진행하시고 이 부분은 실무적으로 확인해서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간사 ○○○

예.

○ 이사장 ○○○

그러면 이 안건 말고 또 다른 안건에 대한 의견을 얘기해 주시죠.

○ 이사 ○○○

휴가일수 4일까지만 비용을 주다가 그 규정을 없앤다는 얘기고, 휴가일수 그 부분은?

○ 이사 ○○○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관들이 이제는 휴가를 가라는 것이죠.

○ 이사 ○○○

그렇죠. 그런데 지금 4일까지만 비용을 인정해 주던 것을 그냥 전부 다 인정한다는 얘기고요?

○ 대표이사 ○ ○

예. 연차도 그렇고 다 소진하라는.

○ 이사 ○○○

연월차.

○ 대표이사 ○ ○

예.

○ 이사 ○○○

그런데 왜 4일간만?

○ 간사 ○○○

저희가 휴일근무 같은 경우에는 규정상 3급 이상은 보직을 받기 때문에 평일에 부재해서 근무가 평크나지 않게끔 휴일근무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급 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휴일근무라고 설명이 들어간 겁니다.

○ 이사장 ○○○

또 다른 의견, 혹시 ○○○ 이사께서..

○ 이사 ○○○

지금 휴일근무 보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 예산이 다 소진되면 어떤 방법으로 보전을 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 간사 ○○○

그 부분도 인사업무 맡고 있는 기획경영팀장에게 설명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경영팀장 ○○○

기획경영팀장입니다.

이 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존에 휴일근무를 4일까지 하는 부분을 유지하면서 예산이 소진되면 비용을 지급하지 않겠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4급 이하의 경우 휴일근무를 월 4회까지 인정하고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국가적인 상황에서나 일·가정 양립이라든지 근무를 단축하는 그런 제도의 일환으로 맞추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의 연차를 촉진하고 휴일에 쉬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휴일근무를 줄이자는 저희의 어떤 캠페인적인 상황에서 추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 규정에 오늘 승인을 해 주시면 세부기준에 4일보다 더 적은 날짜로 해서, 예를 들면 3일이라든지 2

일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휴일근무를 인정하지 않는 부분을 개선하려는 그런 상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사장 ○○○

답변이 잘 됐나요?

○ 이사 ○○○

예. 충분히 노조 측하고도 협의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경영팀장 ○○○

저희가 이 부분은 노조 측과 사전 협의가 됐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휴일근무를 부득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또 DDP라는 시설을 운영하고 주말에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수당이 아닌 대체휴무로 주중에 주말에 일한 부분을 휴일을 저희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 이사 ○○○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것 바로 적용되는 것이죠?

○ 기획경영팀장 ○○○

예.

○ 이사 ○○○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예산을 얼마로 잡아놓은 거예요? 4시간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 기획경영팀장 ○○○

올해는 4시간으로 잡아놨는데요. 저희가 총 인건비 개념으로 해서 지금 그 부분을 인건비 상승분도 있고 해서 다시 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사 ○○○

다시 산정한다는 것은 줄어든다는 거예요?

○ 기획경영팀장 ○○○

저희가 기본적으로 기본급이 인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기본급 인상분을, 수당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없애고 기본급 인상으로 산입해서 직원들한테 안정적인 급여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려고 합니다.

○ 이사 ○○○

노조에서는 대체근무로 하면 반대를 합니까?

○ 이사 ○○○

일부 반대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획경영팀장 ○○○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년 출연금으로 직원들의 기본급여를 산정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있는데, 지금 실제로 매년 서울시에서 허용하는 부분이 3.5% 인상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저희한테 총 인건비 상한선으로 주는 부분이 4.9%로 올해 인건비 운영기준 지침 수정된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당들을 기본급에 산입하는 개념이고, 실제로 직원들한테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 이사장 ○○○

또 다른 의견 말씀해 주시죠.

○ 이사 ○○○

지금 실무자가 한 것은 지방계약법에 정확히 맞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정확히 맞는데, 이게 우리 공직생활 할 때 어느 경우도 이것을 적용해 보거나 실질적으로, 지방계약법이 언제 이런 조항이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지방계약법 14조 1항에 단서조항에 의해 가지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나열하는데, 그중에 첫 번째에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 가지고 딱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정 자체를 개정하려는 의도라든가 내용은 전혀 잘못이 없는 것 같아요. 다만 현실적으로 이것을 과연 실제로 적용하고 있는 것인지, 적어도 서울시의 상식에서는 맞지 않았던 조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사문화되거나 실제 적용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아무튼 이 규정 개정하고 별개 문제인 것 같습니다.

○ 대표이사 ○ ○

그 목적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하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데 그것을 빼먹고 바꿔야 한다고 하면 안 되죠.

○ 경영본부장 ○ ○ ○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혼란을 끼쳐드려서 죄송하고요.

경영본부장입니다.

이 법령은 2014년 2월 5일 날 이미 시행이 되었었는데요, 저희가 아직 규정을 못 바꾼 사례입니다.

저희가 1인 수의계약은 2천만원 범위 한도 내이고, 2인 입찰을 받았을 때 수의계약은 5천만원 한도 내입니다.

그런데 보통 2천만원 한도 내에서 계약서를 생략할 수 있다 라고 했을 때 저희가 각서라든가 승낙사항이라든가 계약서에 준하는 사항들 계약사항을 쪽 봤는데, 이 법의 취지는 계약자 '을'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을' 대상인 경우에 2천만원에서 5천만원 수의계약일 경우에는 이행보증보험을 떼와야 되는데, 이행보증보험에 대한 절차를 간소하게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의 한도금액과 지금 이 '계약서를 생략할 수 있다'라는 한도금액을 맞추다 라는 취지이고요.

이사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계약사항에 대한 '을' 측의 이행사항에 대한 것들은 지금 저희가 일반적으로 디자인재단에서는 계약서를 다 제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태까지 재단 있는 이후로 계약서 없이 계약했던 사례는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특이한 사례들만 그렇게 적용할 수 있다 라고 받아들여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한도와 계약서의 생략사항을 맞추다 라는 그런 취지로 봐주시면 되겠

고요. 계약업체들의 이행보증보험에 대한 어떤 절차적인 부분을 간소화시켜주기 위한 것으로 그런 규정을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 이사 ○○○

저도 지금 들으면서 이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수의계약 범위를 정해 놓고 계약은 거의 수의계약이 아닌 그냥 일반 계약처럼 했을 경우에 이행보증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험도 다 이행을 해야 되고 까다롭게 하니까 '그러면 수의계약을 왜 하나?' 하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법 개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그렇다고 계약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계약서에 준하는 다양한, 법에도 협약서, 협정서 이런 것에 준하는 지켜야 될 사항들, 수의계약 범위 안에서도 지켜야 될 사항들은 다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것은 법을 따라가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게 '갑'의 입장에서 보면 말이 안 된다고 하지만, '을'의 입장에서 보면 수의계약이라 해 놓고 모든 것은 거의 수의계약이 아닌 형식으로 다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 이사 ○○○

저도 사족 같습니다만 '94년도에 서울시가 양키본드라는 것을 2기 지하철 건설재원을 발행할 때 그 당시에 S&P하고 무디스가 와서 저희들 신용평가를 하거든요. 그때 계약방법이 청구에 의한 지급이었어요.

《 ○○○ 이사 입실 》

그래서 저희 그 당시에, 지금도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다 쓰지 못 하는데, 그 당시에 청구에 의한 지급이라는 게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10만 불 요구하면 10만 불 주고, 15만 불 요구하면 15만 불 주는 그런 컨셉이었는데, 그게 어떤 신용이 극도로 보장되는 사회에서는 그런 계약방법도 가능한 계약방법이다 해서 아마 그런 취지들이 전반적으로 반영된 법 개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실제로 그래도 담당자들이 불안해서, 생략할 수 있다니까 생략하고 나서 만약 나중에 잘못됐을 경우에 책임문제 때문에 실제로 담당자들은 선뜻 적용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개정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 이사장 ○○○

그러면 이 회계규정에 관한 것은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도 괜찮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이사 ○○○

예.

대표님.

○ 대표이사 ○ ○

이게 무조건 옳기 때문에 바뀌야 된다는 그런 논리보다는, '우리 재단의 특수성으로 수익계약 여건이 발생하고 유형이 이렇기 때문에 이 규정이 바뀜으로서 원활하게 된다.' 라는 설명이 사전에 돼 있어야지, 상위법령이 이렇게 됐으니깐 이렇게 바뀌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기업적인 얘기이고, 그것을 문구에 따라서 이해하는 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게 바뀌었을 때 목적성에 대한 것을, 안 바뀌도 충분히 되면 굳이 이것을 바꿀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지금 부족하니까 혼선이 오는 것 같습니다.

○ 이사 ○○○

안 바꾸게 되면 감사에 지적될 걸요.

○ 대표이사 ○ ○

그런 얘기를 하시라는 얘기죠.

해야 될 이유를 설명해야지, 이 문구가 지금 그렇게 의미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 경영본부장 ○○○

사전에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미숙한 진행이 돼서..

○ 이사 ○○○

그러니까 지금 법에는 한 이사님이 지적한 대로 나와 있네요.

나와 있는데, 계약서를 써야 되는 경우하고 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하고, 2항부터는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2, 3, 4 그 밑에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1항의 경우에 왜 계약서를 안 써도 되는지에 대한, 생략하고 가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는 거예요?

아까 잠깐 설명했는데, 그런데 저는 부작용이 더 클 것 같거든요.

지금 디자인재단에서 사례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수의계약 사유도 되고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가 되면 담당자가 재량으로 '너하고 나하고 계약 맺었다. 내가 3천만원짜리 줄게 일 해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너하고 나하고 언제 계약했나?'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지금 사례가 있잖아요. 실제로 사례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하고, 실제 일한 사람이, 아까 '을'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을'은 5천만원 이하의 보증금도 면제받거든요.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5천만원 이하의 보증금 안 내고 되는 것이잖아요. 이행보증금이니 이런 것 없잖아요.

그러면 '을' 입장에서도 계약서를 쓰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지, 계약서도 없이 '내가 그냥 일해 줄게요.' 그러고 각서 한 장, 예를 들면 '일 하면 내가 돈 줄게.' 이런 각서 한 장으로 일을 하는 상대방도 이상하고, 시키는 사람도 이상하지 않냐 이거죠.

이것을 어떤 경우에 써먹을 것이냐 이거예요.

이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 이사 ○○○

이 취지가요, 아까 우리 한 본부장님 이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인데, 통상적으로 당연히 어떤 계약을 하게 되면 물품이든 용역이든 시설이든 '이게 얼마짜리다.'라는 것들이 사전적으로 확정이 돼서 가는 것이죠. 그게 입찰이든 어떤 절차든.

그런데 저도 이해를 해 보니까 간혹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뭐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게 현 단계에서 금액 확정이 힘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기존에는 '3천만원 이내에서는 어떡 어떤 일들을 이 범위 내에서 하고 최종적인 금액 확정은 끝나고 정산을 해 보자.' 아마 이런 개념의 계약이 필요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을 위한 조항이고, 그래서 그것을 기존에는 '3천만원을 맙시범으로 해라.'라는 것들을 5천으로 옮겨주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저도 결론적으로는 이 조항은 통과시키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목적이나 방향들은 있는데 그게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현 단계에서 fix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여지는 만들어주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고 본부장님 말씀처럼 때에 따라서 이게 무조건 '을'을 보호하는 일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일의 특성상 그런 계약도 할 수 있는 여지는 열어야 되고, 그래서 뒤에 단서가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그냥 백지로 있는 것은 아니고 '사전적으로 어떤 청구나 상호 양해각서나 이런 어떤 최소한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은 미리 비치를 하라.' 이런 정도니까 기본적으로는 통과는 시키고 향후 시행과정에서는 재단의 내부절차나 감독기관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식으로 오·남용이 안 되게끔 관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사 ○○○

이게 '할 수 있다' 조항이지, '해야 한다'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열려있는 것이고, 디자인재단에서 모든 계약서 다 작성하려면 해야 돼요.

이것은 왜냐하면 특별한 경우에 할 수 있다고 열어놓은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사장 ○○○

○ ○ 대표님이 보안을 해 주시면 어떨까요?

○ 대표이사 ○ ○

저희는 아주 작은 계약도 계약서에 준해서 절차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익계약 같은 경우는,

○ 이사 ○○○

그렇게 운영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법 조항이 포괄적으로 열어놓고 할 수 있다고만 돼 있는 것이죠.

○ 대표이사 ○ ○

그런데 저희 방침은, 상위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을 어떤 형태로든지 저희가 따라가고 거기에 맞춰서 법령을 바꾸다 보니까 지금 계속 수정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내용들은 아주 작은 단위라도 다 계약을 하게 돼 있고 그에 대한 감사규정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 목적성을 설명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경영본부장 ○○○

우려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크게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소액인데 당초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 그 부분을 정해서 하는 소위 소액계약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행보증보험을 끊지 못하는 아주 소규모 개인이라든가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보호개념인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부분을 '반드시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할 수도 있다'라는 오픈형태의 규정이고요. 이 부분을 내부 시행 내규로 정해서 이 부분들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매뉴얼해서 그런 장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이사장 ○○○

그러면 저 안건들 중에서 2번, 3번, 4번 안건은 제가 보기에 는 저렇게 했을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있나요?

혹시 ○○○ 이사께서 아마 저기에 해당될 사람들에 대한 대변자이실 텐데 거기에 대한 의견 있으면 말씀 한번 해 봐주시죠.

○ 이사 ○○○

1번 안건은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아까 걸렸던 부분이 휴일근무수당 같은 경우인데 취지는 분명히 좋아요.

《 ○○○ 이사 퇴실 》

휴일근무가 없어져야 하는 게 사실 맞는데, 그게 의견수렴을 조금 더 하고 나서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분명히 휴일에 더 많이 나와야 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보전이 안 될 경우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이사장 ○○○

다른 조항들은 문제없고요?

○ 이사 ○○○

예.

○ 이사장 ○○○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몇 번이죠?

○ 이사 ○○○

보수규정 일부개정입니다.

○ 이사장 ○○○

그러면 보수규정은 오늘 의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인가요?

○ 이사 ○○○

아까 노조하고 협의가 끝났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 이사 ○○○

예. 협의하셨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예.

○ 이사장 ○○○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이 의결에는 문제가 없고요?

○ 이사 ○○○

예.

○ 이사장 ○○○

혹시 2, 3, 4, 5, 6, 5번 안건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신가요?

[ 의견 제시하는 이사 없음 ]

아까 ○○○ 감사님께서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해를 어떤 것인지 저희들이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5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면 될까요?

[ 이사들 “예!” ]

○ 이사장 ○○○

그러면 (제139호 「보수규정 일부 개정의 건」, 제140호 「인사규정 일부 개정의 건」, 제141호 「임직원 퇴직금규정 일부 개정의 건」, 제142호 「이사회유영규정 일부 개정의 건」, 제143호 「회계규정 일부 개정의 건」) 의결이 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 이사들 동의 ]

고맙습니다.

○ 감사 ○○○

죄송하지만 제가 아까 1호 안건에서 잠깐 말씀드렸다가 넘어갔는데, 어차피 수익에 대한 게 예측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p)6 보시면, 어차피 이게 추정치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하고 있었는데, 금액이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보면 판매 수입이 8억2,300만원이고 수수료 및 부가세 금액이 마이너스 9천하고 2억하고 8200 해서 순수익이 4억5천으로 지금 추정을 해 주셨는데, 아까 제가 판매대행 11%에 부가세가 포함이 돼 있냐고 말씀드렸는데 없다고 하셨었잖아요.

그런 논리라면 여기 부가세 'C×10%'인 8,230만원은 제외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순수입금액은 4억5천이 아니라 3억6,770만원으로 수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금액에 대해서 확정이 되면 나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몰라서 일단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 이사 ○○○

일단 이래야 될 것 같은데요.

설사 이것이 금액이 다소 틀린다 하더라도 추정된 금액으로서의 예측치이기 때문에 변동은 최종적으로 문제없는 것이고, 일단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한번 의결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수정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실무적으로 참고해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인 세입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사장 ○○○

예.

○ 기획경영팀장 ○○○

저희가 이 부분은 확인을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말씀하시는지 이해를 했거든요. 그 부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감사님께는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사장 ○○○

고맙습니다.

### Ⅲ. 보고안건 보고

○ 이사장 ○○○

그러면 보고사항이 또 몇 가지 있으니 그것 진행해 주시죠.

○ 간사 ○○○

중간에 네이버디자인센터장 ○○○ 이사님 들어오셨습니다.

잠깐 인사해 주시고요, 소개만 드리겠습니다. 보고안건 보고 이후에 신입이사님들 잠시 인사 나누도록 하고요.

보고안건 3가지입니다.

인쇄자료 (p)65 봐주시기 바랍니다.

1번 '사무위임전결내규 개정 건'은 재단의 사업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주요사업 기획과 결과보고 등의 절차에서 기획경영팀장 협조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2번 '기부금관리 및 운영규정 시행 내규 개정 건'입니다.

업무분장 변경에 따라서 기부금 운영 주관부서와 주무부서 명을 업무 소관부로 변경하고, 위원장이 부재했을 때 대행자와 소액 의결일 경우 임시수행자 명을 현재의 직명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 내규 같은 경우에는 규정과는 달리 이사회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완료 이후에 오늘 2가지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입이사 임명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3기 이사님 중에서 다섯 분이 국회의원 당선, 근무지 해외발령 등 개인사정으로 인해 사임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부족한 분야 위주로 새로운 이사님들을 모시게 되었고요.

지난 2월 서울시와 시의회, 이사회 추천으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했고, 세 차례 회의와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서울시에서는 5월 12일자로 비상임이사 여섯 분, 근로자이사 한 분을 임명하였고 즉시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임명장 전달을 완료하였습니다.

신임이사님 현재 이사회 임원 현황은 테이블 위에 인쇄되어 있는 명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이사장 ○○○

신임이사님들 중에서 오늘 한 분만 빠지셨죠?

○ 간사 ○○○

예, 오늘 한 분만 빠지셨습니다.

법률 쪽에 한맥 ○○○ 변호사님만 오늘 개인사정으로 불참하셨습니다.

○ 이사장 ○○○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 재단 이사회에 이렇게 가담해 주셔서.

이게 공익근무잖아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정말 바쁜 시간 할애를 해 주시고 해서 고맙습니다.

· 기타 토의

○ 이사장 ○○○

오늘 오셔서 이사회를 진행한 소감이라든가, 또 앞으로 저희들이 좋은 생각을 모아서 서울디자인에 대한 큰 배를 같이 몰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인사말씀 포함해서 한 분씩 해 주시면, 한 본부장님이 먼저 시작을 해 주시면 어떨까요?

○ 이사 ○○○

저는 간략히 소개 드리면, 제가 2012년 1월부터 '14년 7개월까지, 한 2년 7개월까지 서울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을 했고요, 그 당시 우리 ○○○ 이사장님 모시고 이사를 했습니다.

제가 2011년도에는 아까 ○○○ 이사님 계신 자리에서 경영기획관으로, 저는 여기 비상임이사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햇수로는 제가 꽤 많은 편인데요.

사실 그렇다고 아는 것은 없는데 행정경험이 있으니까 과거와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도 제가 추천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수 )

○ 이사장 ○○○

고맙습니다.

재단을 원거리에서 보실 수 있었던 시간이 있었으니까 좀 더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 이사 ○○○

저도 저희 서울시립대가 서울시가 운영하는 학교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로 서울시의 자문 역할을 많이 하게 되다 보니 또 이렇게 이사로 온 것 같습니다.

저도 열심히 도울 수 있는 부분 돕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사회 할 때 한 번씩 이렇게 오는데, 아마도 여기 오신 분들이 공무원 하신 분들 제외하고는 용어가 익숙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발표하니까 저도 잘 이해하기 어렵고 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설명이 쉽게 설명이 되고 이해를 구해야 되지 않을까.

○ 이사장 ○○○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 이사 ○○○

용어 자체가 생소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이사장 ○○○

그런데 혹시 다음에라도 그런 용어가 등장하면 그 즉시 말씀을 해 주시면, 저도 어떤 것은 모르는데 그냥 체면 때문에..

○ 이사 ○○○

체면은 아니고, '담당자가 알아서 물어보겠지.' 하고 저희 인문학자들은 가만히 무식한 채로 남아있었는데요.

○ 이사장 ○○○

저희가 건축분야가 큰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또 올해부터 서울건축 비엔날레가 큰 비중으로 저희들 사업 속에 쑥 들어왔기 때문에 이 교수님의 여러 가지 의견이나 아니면 이런 생각들이 저희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 이사 ○○○

얘기하신 김에 제가 이사회하고 상관없이, 저도 여기서 작년에 건축문화재 할 때하고 그 전에도 행사 때문에 많이 왔다갔다해 봤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 전시하는 것 자체가. 바닥, 벽, 천장, 절대 못 건드립니다.

여기는 분명히 전시장인데, 물론 전시장으로 설계가 안 된 구역들, 전시장 이용하다 보

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천장도 못 건드리고, 벽도 독립된 구조로 해서 기존 벽에다가 지탱하면 안 되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많아서, 이게 공간으로 보면 너무 지나치게 고매한 공간을 유지하려고 하는 인상으로 비쳐요.

친근하게 다가가는,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이렇게 서울시에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도 없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 대표이사 ○ ○

최근에 보시면 전혀 그런 일이 없습니다.

○ 이사 ○○○

건축만 그렇게 못 건드리게 하는 건가요?

○ 대표이사 ○ ○

그리고 저희가 원상복귀 보수의 개념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건물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오브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코엑스나 이런 전시공간처럼 막 해 놓고 가면 바닥청소 한번 하는데 예산이 엄청 들어가고 그것을 보수하려면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 이사 ○○○

그런 부분을 저는 우리 ○ ○ 대표님께서 전향적으로, 전시공간이면 전시공간이어야지, 전시공간 자체가 전시가 되는 것을 자꾸 염두에 두니까 지금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 자체가 너무 원형유지가 돼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어서, 전시할 때 도 '이건 건드리면 안 되고' 이렇게 제약조건이 많아서 굉장히 신경 쓸 게 많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이사장 ○○○

이게 ○○○ 본부장님과 관련돼 있는 것인가요?

○ 대표이사 ○ ○

저희가 민간위탁사업으로..

○ 이사 ○○○

건물주니까요.

○ 대표이사 ○ ○

전세를 살기 때문에..

○ 이사장 ○○○

고 본부장님, 말씀을 해 주시죠.

○ 이사 ○○○

글쎄요. 제가 처음 들어 가지고.

우리 재단에서 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사장 ○○○

그런데 어쩌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얘기를 함축해서 하는 얘기라고 저는 느껴지는데요. 그것에 대한 어떤, '큰 개념이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 그것을 이 교수님이 마련해 주시면 여기 DDP를 운영하는 데 어떤 기준이 되는, '앞으로 이 건물이 어떻게 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해 주시면,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해 주시면 그것이 또 반영을..

○ 이사 ○○○

이 자체가 아시겠지만 내부공간 자체도 가용공간이 적은데다가 그 벽을 또 못 건드리게 하니까 벽 전시하려면 또 벽을 쳐야 되고, 그러니까 더 좁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지 않으면..

○ 이사장 ○○○

이 교수님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은 바로 그런 얘기를 저희들이 듣고 싶고 같이 그것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거침없이 얘기해 주시죠.

○ 이사 ○○○

디자인플라자인데 디자인을 유지하려고 더 신경을 쓰는..

그것은 앞으로 당장은 안 되고 조금씩 개선해 나가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이사장 ○○○

아마 이번 건축 비엔날레를 계기로 또 여러 가지 새로운 쓰임이나 활용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요.

고맙습니다.

○○○ 선생님.

○ 이사 ○○○

저는 아까 이미 소회를 말씀드렸고요.

살림살이를 덜컥 듣게 된 느낌이 있어서요. ‘얼마나 많은 인원과 거대조직이 움직이고 있구나.’ 새삼 알게 됐고요.

그 부분은 사실 저도 약간 공감이 되네요.

아직 저는 무언가를 해 보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집이라는 공간이 있으면 분명히 사랑방의 역할도 있고 이런 것처럼 모든 것이 안방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도 사실은 약간의 위화감을 느끼는 것은, ‘디자인재단에서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진입장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 ○○○ 이사 퇴실 》

그것은 시간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제가 올 자리인지 아직도 의심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감사합니다.

○ 이사장 ○○○

고맙습니다.

이제 미디어시대이고 콘텐츠시대이고, 옛날에 그런 얘기도 많이 했었거든요. ‘여기에서 디자인 영화제를 하자.’ 또 ‘영화적인 공간으로 새로운 미디어의 발신지가 되도록 하자.’ 이런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시는 분야를 이쪽에 깊숙하게 관여하는 데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아마,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장벽을 스스로 커튼을 열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사 ○○○

그 벽을 제가 한번 뚫어보겠습니다.

○ 이사장 ○○○

○○○ 이사님.

○ 이사 ○○○

저는 패션 쪽에는 회의도 많이 참석해 보고 했으니까, 여기 오니까 다른 분야가 있어서, 특히 회계 이런 것은 전혀 몰라서 제가 뜬금 없기도 하고, 어떻든 패션 쪽이 얼마만큼 회의를 많이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DDP 운영할 때 그런 쪽에 도움이 되는 게 있으면 그때 보아왔던 것이라든가 했던 것, 그런 위주로 말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다른 분야니까 잘 모르겠고요.

○ 이사장 ○○○

그런데 지금 재단이 전체가 이렇게 운영되는 데 패션 DDP로, 패션이 가장 중요한 분야로 예산도 그렇고 하는 비중도 그렇고, 또 여기 패션본부가 따로 있을 정도로 중요한 분야거든요.

○ 이사 ○○○

DDP에 대해서 분명히 또 나중에 회의를 하겠죠? 패션워크 때를 맞춰서.

○ 이사장 ○○○

패션워크는 1년에 두 번씩 하는 가장 큰 행사이고요.

○ 이사 ○○○

하여튼 DDP가 생겨서 너무 좋습니다.

○ 이사장 ○○○

박 이사님이 그런 데 대해서 좋은 이야기나 생각을 아이디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사 ○○○

예. 디자이너들을 이해하는 데 많이, 생각하는 것을 많이 전달하겠습니다.

○ 이사장 ○○○

그래서 패선계를 대변하셔서 여기서 얘기를 많이 해 주시면,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우거나 미래 계획을 세우는 데 많은 기여를 부탁드립니다.

○ 이사 ○○○

예, 감사합니다.

○ 이사장 ○○○

○○○ 이사님, 오랜만입니다.

○ 이사 ○○○

안녕하세요.

우선 오늘 첫날부터 늦어서 죄송하고요. 제가 오전에 갑자기 미팅이 잡혀서 늦었습니다. 사과 드리고요.

저는 아마 디지털IT 대표로 추천을 받은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부족하기도 하고, 저는 그냥 회사만 다니는 사람이라 부족하기도 하고 게으르기도 하고 그래서 특별히 외부활동을 많이 하지 않는 편이기는 한데요. 이렇게 직분을 주셨고 또 기대하신 게 있으실 테니까 제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 열심히 찾아서 기여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 이사장 ○○○

제가 여기 소임을 맡고 나서 교통방송을 계속 듣거든요.

그런데 교통방송이 서울시에서 운영해서 그런지 서울시에 관한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새벽 6시에 듣는 방송이 있어요, 교통방송에.

그런데 거기에 네이버에 근무하시는 분이 일주일에 한두 번씩 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 분이 네이버 빅데이터 담당 이사더라고요.

그분이 네이버에서 빅데이터 분석한 것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갖고 와서 그것을 애

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빅데이터 분석한 것을 갖고 와서 얘기하는데 저희들이 귀담아 들을 내용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재단 운영을 하는 데 사실은 네이버나 이런 데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아주 핫한 이런 이야기, 아니면 거기에서 하는 사업 이런 것들 중에서 과감하게, 100일 안에 모든 것을 저희들한테 쏟아 부어주시면 아마 저희들도 정신이 번쩍 들고, 지금 또 새 정부에 굉장히 중요한 분이 네이버에서 가시잖아요. 그만큼 제가 보기에 그 분야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도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김 이사님이 앞으로 저희 재단을 위해서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사 ○○○

예, 알겠습니다.

○ 이사장 ○○○

○○○ 이사님.

○ 이사 ○○○

저도 오늘 처음이라 되게 얼떨떨한 자리인데요. 아까 이사장님이 많이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했고, 제가 정말 평사원으로서 관리자분들을 모르는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그것을 대변하러 왔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꼭 필요할 때는 발언하겠습니다.

○ 이사장 ○○○

혹시 이런 제도가 서울시에만 있는 것인가요?

○ 이사 ○○○

예, 서울시가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 이사장 ○○○

저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 제도가.

제가 발언권을 드려서 하지 마시고요, 다음에는 그냥 자유롭게 얘기해 주세요.

○ 이사 ○○○

---

예, 알겠습니다.

○ 이사장 ○○○

그리고 가급적이면 솔직한 얘기를 해 주시는 게 재단을 위하는 것이고요.

○ 이사 ○○○

예.

○ 이사장 ○○○

서 감사님, 오늘 아주 결정적인 문제제기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대개 감사님들이 수치나 이런 것들을 가장 잘 보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이해를 전혀 못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 ○○○

예.

○ 이사장 ○○○

고 이사님, 오늘 한 말씀도 안 하셨는데요.

○ 이사 ○○○

어쨌든 방 선생님도 오랜만에 뵈서 반갑고요.

저도 생짜 무식으로 와서 회의에 참석하면서 배운 게 많고, 그 다음에 이사장님 말씀하셨듯이 이전 어디까지나 공익 봉사로 자기 전문 분야에서 쌓은 것을 무언가 서울디자인재단과 서울시민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생각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각자 전문가라는 게 전문가의 함정이 있어요. 자기 분야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 분야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뭔가 무식해도 얘기를 해서 그것을 통섭을 해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내놓아서 보여주는 그런 이사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박 선생님은 패션을 아시고 방 선생님은 영화를 알고 김 선생님은 빅데이터를 알고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이 얘기 저 얘기 툭툭 던져서 그게 어떤 새로운 것을 내놓는 그런

모범적인 이사회가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아까 이 선생님이 이사회 보고할 때 전문용어 쓰냐고 하는 게, 저는 위원회는 가봤어도 이사로 참여하는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아, 이사회는 다 저렇게 어려운 말씀하시는 것인가보다.’

그러니까 무언가 기본전제를 설명하지 않고, 시민 이사회라고 생각하고 시민한테, 서울디자인재단의 일을 모르는 시민들을 붙들어놓고 설명을 한다는 자세로 보고서를 항상 만들고 보고를 해 주시면 이사들이 자기 전문지식, 우리가 회계를 몰라도 단순히 드는 의문은 있거든요. 아까 계약서 같은 것도 ‘아, 계약서는 서울시에서 5천만원 이하는 안 쓰나보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지만, 좀 더 쉽게 설명하시면 우리가 일반 시민으로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박 선생님이나 이 선생님이 이 DDP를 옛날에 이용해 봤다는 것에 굉장히 고무적으로 느끼는 게, 아까 정 이사님이 간부들은 모르는 평직원의 그게 있다듯이 절대 빌려주는 사람은 모르는, 이용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하나씩 하나씩 개선하는 게 서울시디자인재단과 그 혜택이 서울시민에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회의에 참석하는 분들은 자기 일생에 도움도 안 되는 경영정보, 돈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귀한 시간 내서 1시간, 1시간 반 왔을 때는 여기 계신 분들의 머리 속에 있는 것을 쭉쭉 빼내서 여기 디자인재단이 남는 장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사장 ○○○

고맙습니다.

본부장님,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시죠.

○ 이사 ○○○

새로 임용되신 이사님들 축하드립니다.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디자인재단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들을 잘 활용해서 여기에 공공 기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나온 얘기 중에서 우리 디자인재단, 이 DDP라는 공간에 관한 문제, 항상 부

뒹쳐있는데요. 참 쓰기가 어렵다 라는 얘기를 여러 번 저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요. 공간 자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정도로 이 공간이 넓지 않다는 것도 하나의 제약요인이기도 하고, 또 아까 지적을 해 주셨지만 공간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사님들께서 제기하신 대로 이 공간이 보다 시민들한테 좀 더 친화적인 공간으로, 편리한 공간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재단과 함께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새로 이사님들 되셨으니까 디자인재단 이사회가 좀 더 좋은 이사회로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 ( 박수 )

○ 이사장 ○○○

이 대표님.

○ 대표이사 ○ ○

신임이사님들 모시고 갑자기 이사회를 개최해서 들이밀 듯이 안건을 드려 죄송합니다.

제가 사전에 충분히 사업목적과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번 이사회가 어렵게 됐었습니다. 그 점 제가 미안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충분히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재단에서 책자를 받으셨을 텐데 안 받으신 이사님들을 위해서, 저희가 올해 1년 사업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재단 직원들조차도 서로 무슨 사업을 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 사업계획에 준해서 여기에 나와있는 사업을 올해 중점적으로 하게 될 것 같고요. 혹시 시간 되시면 읽어보시고 의문되는 사항이나 아이디어를 언제든지 수시로 저한테 주시면, 저는 대표이사지만 여기 이사님들은 저를 통해서 운영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는 것이니까 제가 한 분 한 분 의견 주시는 것을 굉장히 소중한게 저희 경영에도 반영을 하고 충분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이사회 때 아니시더라도 언제든지 저한테 문자를 주시든지 다른 실무자들한테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은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시간 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박수 )

○ 이사장 ○○○

다음 이사회는 언제쯤 하게 될 것 같은가요?

올해 예상 일정을 미리 알 수 있을까요?

○ 간사 ○○○

저희가 분기별로 해서 1분기, 2분기 정도까지 이사회 완료가 됐고, 다음 분기는 한 7, 8월 정도인데 그때 휴가기간이어서 그것은 이사장님하고 별도로 논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이 자리에서 날짜를 어느 정도 논의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실 것 같아요.

○ 대표이사 ○ ○

다 스케줄이 있으시니까 예측 가능하게, 우리가 올해 몇 번을 해야 하는지 규정이 있잖아요.

○ 간사 ○○○

저희가 1분기 때 보고 드렸었는데, 분기별로 한 번 해서 총 네 번 예정했고, 2분기 이사회가 오늘 개최되었습니다.

그래서 3분기 이사회는 7, 8, 9월 경에 날짜를 잡아서 별도로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 이사장 ○○○

뜨거운 여름에는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니까 한 8월 말 개학하기 전에, 개학 직전에 한번 하고, 그러면 한 11월 정도에 또 하면 되나요?

○ 간사 ○○○

예, 정기이사회는 12월 말일자 정도로 예상하시면 됩니다.

보통 12월 20일에서 26일 사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이사장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두 번 정도로 예상하시면 되겠네요.

○ 간사 ○○○

앞전에 설명 드렸지만, 신입이사님들께 저희 재단 소개나 DDP 투어 일정을 별도로 정해서 조만간 6월 중에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사장 ○○○

예.

한 2주 전에 풀 김이라고 하는 선생님을 만났는데요. 이분이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46개국 교육부장관 회의를 했다고 그래요.

거기 주제발표를 하러 오셨는데, 스탠포드대학의 교육공학 전문 교수인데 이분이 책을 냈어요.

그래서 그것하고 그날 잠깐 서로 얘기를 나눴는데, 이분이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하면서 가장 문제점을 하나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게 뭐고 하면, 우리나라 교육은 점점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질문을 안 하게 만드는 교육이래요. 그래서 초등학교는 질문 많이 하다가 중학교 가면 조금 덜하고, 고등학교 가면 조금 덜하고 대학교 가면 더 덜하는데, 직장인이 되면 전혀 안 한대요.

그분의 주장은 질문하는 능력이 정말 그게 능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굉장히 공감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저희 이사회나 재단이 그런 질문하는 문화, 정말 저도 질문하고 싶은데 체면 때문에, '이사장이 그런 것도 모르나?' 그럴까봐, 질문이 무지무지 많은데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회하는 입장인니까 제가 그런 역할을 할 수는 없고, 정말 의문이 생기시면 수시로, 그러니까 이사회가 아니더라도 이 사업계획 책자를 보시더라도 이메일이나 이런 것으로, 또 전화로 해 주시면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생각이 나는 것은, 앞으로 오는 세상이 4차 산업혁명이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앞으로의 저희들의 어떤 힘은 저는 아름다움의 힘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오는 세상은. 기술의 문제나 이런 것보다도.

그런데 아마 서울시나 아니면 국가나 거기서 아름다움을 다루는 기관은 저는 디자인 관련된 단체나 부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이사회를 운영하거나 재단이 어떤 사업계획을 세우거나 또 실천하는 데 있어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게 장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저희 시민들의 미의식을 고양시키는 실천과 정책, 저는 이것이 계속 일관되게 적용되는 것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대개 규정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많이 다루지만, 그런 논의는 최소화시키고, 굉장히 쉽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거든요. 어렵게 하면 계속 물어봐야 되니까.

그리고 이사회에서는 주로 그런 어떤 정책이나 우리의 사업이나, 아까 ○○○ 선생님이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시민이나 공동체를 위해서 저희가 할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일깨워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정말 디자인이 공공선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정책에 어떻게 반영이 돼야 하고 어떤 사업을 하면 그것이 가장 파급효과가 많을 것인가?’ 저는 저희들이 그 본령을 늘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이사회가 그런 것들을 늘 일깨우고 지적하고, 또 그런 사업을 고양시키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로 오신 이사님들, 정말 기대가 많이 되고요. 가담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폐회 : 15시 44분)

## IV. 폐 회

○ 이사장 ○○○

그러면 오늘 이사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수 )

< 산회 >